

■ 대학설립·운영 규정 [별표 3] <개정 2023. 9. 19.>

교사(교육기본시설등) 기준면적(제4조제3항 관련)

(단위: m²)

구분		계열별	인문·사회	자연과학	공학	예·체능	의학
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	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 연도를 경과하지 않은 대학		12	17	20	19	20
	운영 중인 대학		12	14			

비고: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